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11.] [법률 제21432호, 2026. 3. 10,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농수산물 중 양곡류·청과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어류·패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도매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제4조에 따라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4.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이란 제6조에 따라 구축·운영되어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수단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란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란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거래중개인"이란 제10조에 따라 시장운영자 또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의 임명을 받아 산지와 소비자 간 연결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를 대신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에서 농수산물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및 교환·환불 등 농수산물이 물류창고를 거쳐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장의 개설 및 유통주체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 유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이하 "온라인도매판매자"라 한다)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라 한다)의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의 정비·개선 및 합리적인 관리
2.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이하 "온라인도매거래"라 한다)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4.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물류 효율성 개선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 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니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 한다)은 미리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 플랫폼(이하 "온라인거래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온라인거래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시스템
2. 온라인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상장, 거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3. 온라인도매거래의 대금정산 및 여신관리 시스템
4.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5. 온라인도매시장 고객지원시스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온라인거래플랫폼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시장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거래플랫폼에서의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온라인도매시장의 업무규정) ①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관리, 거래 참여자의 규모·선정·등록방법, 거래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운영자는 제1항의 업무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업무규정을 온라인거래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 등) ①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생산자 관련 단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비축·출하 사업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산물 비축·출하 사업의 수탁기관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 등) ①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등록된 계정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중개인의 임면) ①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산지와 소비지 간 연결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중개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운영자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거래중개인을 두어야 한다.

② 거래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온라인도매구매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5. 제28조제3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중개인을 면직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장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운영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운영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중개인의 업무 등) ① 거래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경매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거래중개인만 수행할 수 있다.

1.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유치

2. 온라인도매거래의 매매방법, 품목 및 규격 등에 관한 관리

3. 온라인도매거래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전 조정 및 절차의 지원

4. 온라인도매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 5.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 6.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 7.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8.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 ②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거래중개인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중개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이하 "품질관리사"라 한다)로 위촉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출하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품질관리사의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시장의 운영

제13조(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 2.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
- 3.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 ④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 또는 온라인거래플랫폼 상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의 연계) ①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조에서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같은 법 제 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 반입할 수 있다.
-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는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반입에 협조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 ① 시장운영자는 원활한 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내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품목별 가격정보 등을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서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표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등을 준수하는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표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이하 "거점물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유통업체에 거점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거점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유통업체는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통합 물류관리시스템(이하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운영자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점물류센터의 물류 정보를 연계·관리하고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관리사로 하여금 거점물류센터에 출입하여 입고된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점물류센터에 출입하는 품질관리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물류센터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⑦ 거점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의무 등)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온라인도매거래가 체결될 경우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매매 농수산물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따른다.

②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제1항에 따라 배송된 농수산물을 확인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고 구매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배송된 농수산물을 확인한 결과 수량의 부족, 품질의 현저한 차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매 농수산물을 배송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인수 거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농수산물의 대금결제) 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는 경우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시장운영자 및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운영자가 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사용료
2. 온라인도매판매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금정산 및 여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시장운영자에게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3.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6.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수 거부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운영자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거짓된 정보의 제공, 거래 참가의 방해 등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거래중개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운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거래중개인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거래중개인을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거래중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때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10.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였을 때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15. 제2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1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26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8.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였을 때
5.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6.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었을 때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26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9.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중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자 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중개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경우
 2. 정가매매·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4.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매수인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제28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에게는 1억원 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취소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취소

제31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와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등록
3.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무를 계속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2.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중개인을 임명한 자(공공기관은 제외한다)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거래중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자(공공기관은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거짓으로 위탁받거나 매수한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
6.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7. 제2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및 제3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한 자(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제외한다)
3. 제23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중개인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거나 직접 판매(타인명의로 출하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거래중개인
 4.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21432호, 2026. 3.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2조제4항에”를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로 한다.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